

2024. 6. 20. 군인 인권 강연

나의 명복을 빕니다

- 나는, 또 채상병은 왜 죽었는가?

일시 : 2024.6.20.(목) 저녁7시

장소 :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공동주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24. 6. 20. 군인 인권 강연〉

나의 명복을 빕니다

- 나는, 또 채상병은 왜 죽었는가?

보훈의 달: 군인의 인권 강연



나의 명복을 빕니다 - 나는, 또 채상병은 왜 죽었는가?

2024.06.20.(목) 저녁 7시

전주시 에너지센터 3층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50)

대통령 소속으로 군인의 사망사건 조사를 담당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으로 드러난
군인의 사망원인을 살펴보고,
군인의 죽음에서 드러난 복무환경의 문제,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과
보훈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송기춘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前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군인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속 필요성

송 기 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I. 군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또는 같은 해 11월 30일 국군 조직 이후 많은 군인이 사망하였다(표 1 참조). 군인이 사망하여 전사 또는 순직으로 분류(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되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예우를 받는다 하여 망인이나 유족의 아픔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죽음을 공동체 구성원이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망인과 유족의 명예회복과 해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군인의 사인이 그릇 조사되거나 왜곡·조작된 경우도 드문 것은 아니고, 그 결과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고 오래도록 이들의 삶이 자책(自責)과 회한(悔恨)으로 피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식이나 형제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아픔은 그저 잊으려 한다고 해서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유족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유족이 쉽게 벗을 수 있는 굴레도 아니게 된다.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선 죽음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표 1〉 한국전쟁 이후 연도별 군인 사망자 수

(단위: 명, 괄호 안은 자해사망자 수)

연도	사망자	연도	사망자	연도	사망자	연도	사망자
한국 전쟁	137,899	1970	2,310	1988	538	2006	128(77)
		1971	2,000	1989	453	2007	121(80)
1954	2,988	1972	1,827	1990	430	2008	134(75)
1955	2,660	1973	1,318	1991	355	2009	113(81)
1956	2,710	1974	1,394	1992	367	2010	175(82)
1957	2,559	1975	1,555	1993	343(129)	2011	143(97)
1958	2,001	1976	1,360	1994	416(155)	2012	111(72)
1959	1,555	1977	1,471	1995	330(100)	2013	117(79)
1960	1,533	1978	1,342	1996	359(103)	2014	101(67)
1961	1,449	1979	1,381	1997	273(92)	2015	93(57)
1962	1,293	1980	970	1998	248(102)	2016	81(54)
1963	1,319	1981	806	1999	230(101)	2017	75(51)
1964	1,471	1982	692	2000	182(82)	2018	86(56)
1965	1,651	1983	675	2001	164(66)	2019	86(62)
1966	2,308	1984	789	2002	158(79)	2020	55(42)
1967	3,165	1985	721	2003	150(69)	2021	102(83)
1968	3,044	1986	653	2004	135(67)		
1969	2,580	1987	619	2005	124(64)		

출처: 국방부 자료¹⁾

수많은 국민의 죽음 가운데 군인의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치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일반 시민이 군의 사망사고 조사과정에 접근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군에서 명령과 통제가 일상화되어 사고의 처리를 지휘관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군의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심의 정도가 높고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의 사망원인 기록과 실제 사인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 등에서 군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생한 해병대 병사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군 내부에서 사건 조사와 처리에 지휘관 등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던 점이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 이 글은 이미 발표된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민주법학』 제82호, 2023. 7., 한상미·송기춘, 「1950년대 군의 이른바 '후생사업'의 한 단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71호, 2022. 10. 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년 종합활동보고서』 제1권(위원회 활동)과 제2권(위원회 조사결과), 2023의 내용을 기초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문가 콜로키움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1) 이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 1956년 사망자는 2,710명으로 되어 있으나, 군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제공한 자료(2022년)에 의하면 2,986명이다. 더구나 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1956년 사망자가 14명이 더 있으므로 1956년에는 최소 3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과제」, 205-206면 참조.

제도적으로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군이 조사와 재조사를 담당하여 유족과 군이 갈등을 빚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이러한 군인 사망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여 군과 유가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망인과 유족의 해원을 추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기구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²⁾,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³⁾,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⁴⁾ 등이 있으며, 제한적인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이와 함께 군의 재조사 기구로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전사망민원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제 다른 조사기구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군인 사망사고 재조사 권한을 가진 기구는 이것이 유일하다.

이 글은 2023. 9. 13. 활동을 마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면서,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사망사고 진상조사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음을 서술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이 이뤄져야 할지를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개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또는 ‘법’이라 한다.)⁵⁾에 의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구로서 유족 등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한 군사망사고⁶⁾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2018. 9. 14. 활동을 시작하여 2023. 9. 13.

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 2000. 5. 16.] [법률 제6170호, 2000. 1. 15., 제정]

3)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6. 1. 1.] [법률 제7626호, 2005. 7. 29., 제정]

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5호, 2018. 3. 13., 제정]

5)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5호, 2018. 3. 13., 제정]

6) 이 법 제2조에서는 군사망사고를 “군인(「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활동을 마쳤다⁷⁾. 활동기간은 당초 3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진정사건이 많아 2021년 활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

위원회는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또는 국가권력에 의한 ‘의문사’ 관점에서 벗어나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건 가운데 진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진정)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역 군인 이외에도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한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였다. 위원회 활동 개시(2018. 9. 14.)와 함께 2년간 유족과 군사망사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진정인)의 진정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20. 9. 14.까지 1,78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조사대상 사건은 국군조직법이 제정된 1948. 11. 30.부터 특별법 시행일인 2018. 9. 13.까지 발생한 군인(전·의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포함)의 사망사고였다. 2021.4.13.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이 개정되어 위원회가 같은 해 7.13.부터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1948.11.30. ~ 2021.9.13.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상 위원회의 편제인원은 경찰,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과 별정직 조사관 등 84명이었으며, 전문위원과 비상임위원(5명) 등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활동하였다. 조사는 위원회 별정직 조사관 20여명과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15명이 파견되어 수행하였고, 조사관이 가장 많은 때에는 56명이었다. 군에서 조사 관련 자료제공과 업무협조를 위하여 현역 군인 9명이 파견되었다. 1년 예산은 68억 정도였으며, 2023년에는 활동 마감을 위한 보고서 작성·발간과 사무실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72억원이 배정되었다⁸⁾.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7) 2023. 5. 3. 위원회 활동기간을 3년 연장(이후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2년 연장 가능)하는 내용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770)이 제출되었으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었다.

8)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은 국방부의 '민간인 보상' 항목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에서 운영지원과장을 파견하였으며, 현역 대위가 예산 집행을 담당하였다. 관점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나 현역 군인이 위원회의 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큰 갈등은 없었다.

2. 위원회 접수 진정사건과 직권사건의 처리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진정사건 1,787건, 직권조사사건 73건 등 모두 1,860건이다. 각 사건은 망인마다 한 건의 사건으로 분류하였으나,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승조원의 사망원인 조사 진정은 망인이 복수(46명)였으나 하나의 사건으로 분류(진정 제1786호 이○○ 외 45명 사건)되었고 2021년 4월 진정이 각하되었다. 또한 1955년과 1956년 사망자 가운데 아직까지 미순직으로 분류된 망인에 대해서는 사망원인별로 분류하여 한 사건의 망인이 214명인 경우(직권 제37호 제갈○ 사건)도 있다. 1956년 직권조사 사건(직권 제37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8호, 제49호)의 경우 조사 대상 망인은 모두 436명이다. 1955년 조사대상 사망자는, 위원회가 펴낸 5년 종합활동보고서에 수록된 사건(직권 제50호, 제57호)⁹⁾만 해도 193명에 이르므로 위원회가 조사한 망인의 수는 2,400명을 넘는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 이틀 전인 2023. 9. 11.에 직권조사사건 3건(직권 제71~73호)¹⁰⁾을 마지막으로 처리하였다.

3. 위원회 진정사건 통계 분석

유족 등이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은 1,787건이다. 이들 사건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9) 위원회가 발간한 『5년 종합활동보고서』에는 진정사건 1,787건과 직권조사 사건 53건의 결정문만 수록되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 9. 13.까지인데 대통령에 대한 종합 활동보고도 종료일 이전에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보고서에는 부득이하게 2023. 7. 31까지 결정한 사건만 수록하게 되었고, 직권조사 사건 가운데 20건은 결정문이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활동조사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이 최종 종료되는 연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10) 이 가운데 직권 제71호 이○성 사건의 경우, 망인은 육군사관학교 교장(당시 김복동 장군) 공관군무병이었는데 마크IV 승용차를 타고 나가 차 뒷좌석에서 두부에 총격을 가한 후 냇가에 내려갔다가 다시 차에 들어가 심장에 총격을 가하여 자살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부대적 요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진상규명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MBC PD수첩(2023. 10. 10. 방영, 「내가 죽은 이유」)에서 다룬 바 있다. 영상자료는 <https://www.youtube.com/watch?v=XG9HDtezXc> 검색일: 2024. 6. 12.

〈표 2〉 연대별 진정사건 수와 진정제기 비율

항목 \ 연대	1948 ~49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계
진정사건수 (건)	4	235	274	343	367	260	170	134	1,787
진정사건 분포율	0.2%	13.1%	15.3%	19.2%	20.5%	14.5%	9.5%	7.5%	100%
사망사건총수 (건)	-	14,473 (1954~)	19,813	15,958	6,916	3,351	1,409	1,022	62,942
사망사건 분포율	-	23.0%	31.5%	25.3%	11.0%	5.3%	2.2%	1.6%	100%
유족의 진정 제기율	-	1.6%	1.4%	2.1%	5.3%	7.7%	12.1%	13.1%	2.8%

이 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첫째, 최근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진정 제기 비율이 다른 연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2000년대 12.1%, 2010년대 13.1%). 이는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생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1950~70년대 사망사고는 전체의 80%를 차지하면서도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다(5.1%).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생존하지 않거나 고령이어서 진정제기에 대해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망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대 동료도 고령이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사망사건의 수에 비하여 위원회에 재조사 진정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2.8%). 군의 조사결과에 대해 만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으나, 군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인 의심이 있다는 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5년과 1956년 사망사건 가운데 아직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군 기록만으로도 순직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 전체 미순직 사건 가운데 40%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의 조사결과에 대해 만족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진정 제기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유족 등이 없거나 유족 등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유족 등이 위원회 진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또는 유족 등이 순직

11)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232-233면.

심사기준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예를 들어, 2015년부터는 자해사망을 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1993년 이후 자해사망자 수와 이 가운데 위원회에 조사 진정이 제기된 사건의 수를 비교한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해사망자는 여전히 일반사망으로 분류되어 있을 텐데, 군이 재조사를 통하여 순직 등으로 예우가 바뀔 수 있는데도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2023년 6월말까지 조사완료한 967건의 자해사망 진정사건 가운데 국방부장관에게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것이 728건으로서 전체 자해사망사건의 75.3%이다.

<표 3> 자해사망자 수와 자해사망 관련 위원회 진정 접수 건수

연도	사망 자수	자해사 망자수	자해사망 진정건수	자해사망 진정비율 (%)	연도	사망 자수	자해사 망자수	자해사망 진정건수	자해사망 진정비율 (%)
1993	343	129	14	10.8	2007	121	80	16	20.0
1994	416	155	15	9.7	2008	134	75	12	16.0
1995	330	100	16	16.0	2009	113	81	16	19.7
1996	359	103	23	22.3	2010	175	82	14	17.1
1997	273	92	16	17.4	2011	143	97	12	12.4
1998	248	102	20	19.6	2012	111	72	8	11.1
1999	230	101	24	23.8	2013	117	79	14	17.7
2000	182	82	11	13.4	2014	101	67	9	13.4
2001	164	66	8	12.1	2015	93	57	9	15.8
2002	158	79	14	17.7	2016	81	54	6	11.1
2003	150	69	15	21.7	2017	75	51	2	3.9
2004	135	67	11	16.4	2018	86	56	7 ¹²⁾	12.5
2005	124	64	12	18.7	합계	4,590	2,137	345	16.1
2006	128	77	21	27.2					

또한 기존에 이미 순직으로 예우를 받고 있음에도 위원회에 재조사를 위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도 전체 진정사건의 19.1%에 달한다. 군의 조사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표 4)이다. 또한 군 기록에 타살이라고 되어 있는 진정사건이 전체의 2.5%이지만 진정인이 타살을 주장하는 경우가 전체의

12) 2018. 9. 13.까지 자해사망자수이다.

13%에 달하고, 진정인들이 망인이 자해사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인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전체 진정건수의 56%에 달한다. 유족들의 군 조사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표 4〉 위원회 진정사건의 연대별 미순직 건수

[2023. 4. 30. 기준]

구분	진정사건			위원회결정 (규명/불능)	위원회 재심사요청 후 결과			
	계	기순직 (전사)	미순직		재심사요청	전사	순직	심사 대기중
1940년대	4	0	4	2	1	0	1	0
1950년대	235	72	163	107	7	69	31	0
1960년대	274	43	231	156	0	83	68	5
1970년대	343	41	302	195	0	98	86	11
1980년대	367	42	325	202	0	117	81	4
1990년대	260	32	228	146	0	100	44	2
2000년대	170	51	119	80	0	51	26	3
2010년대	134	60	74	31	0	20	7	4
합	1,787	341	1,446	919	8	538	344	29

위원회가 처리한 진정사건 가운데 조사결과는 진상규명 65%, 진상규명 불능 5%, 기각 11%이며, 각하 8%, 진정인의 진정 취하로 인한 종료가 12% 정도이다. 이렇나 통계에서 위원회가 65%의 사건에 대해서만 진상을 밝혔다고 평가할지 모르나 그렇게 볼기는 어렵다. 진상규명 불능인 경우는 자료나 참고인 등을 찾을 수 없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지만, 기각은 조사를 할 만큼 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전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여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문이 진상규명 불능이나 기각이라고 해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지 그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5. 위원회 활동의 한계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은 몇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첫째, 위원회 조사가 유족 등의 진정을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5년 동안만 존속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2018년 위원회 출범 당시 군과 다툼이 있던 군인 사망사건의 유족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 국군 조직 이후 23만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였고, 이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 앞에 문제가 되는 사건만을 해결하면 족하다는 안이한 인식¹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인의 사망과 이에 대한 예우의 문제가 유족의 진정 제기 여부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출발은 유족의 항의이겠지만, 이 기회에 그 동안 방치된 억울한 죽음의 재조사를 통하여 망인과 유족의 신원과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한시기구 구성에서 필연적인 것이지만 진정제기기간을 둔 점이다.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유족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뒤늦게 위원회를 알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접수기간 경과 직후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못한 것만 해도 91건이다. 2021년 이후에도 진정 접수를 문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고 2022년에는 ROTC중앙회 차원에서 미순직 학군장교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은 바 있다. 심지어 위원회 활동을 2주 남긴 2023. 8. 31. MBC PD수첩 취재팀에서 1980년 초 사망사건 3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조사관들이 분초를 다투어 조사를 하였고 2023. 9. 11. 3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이들을 순직으로 재심사하라고 요청하는 결정을 하였다.

셋째, 2021년 7월부터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

13)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1년에 평균 300여건의 사건을 조사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조사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1,000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될 것을 예상하여 활동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나 이러한 예상을 훨씬 넘어 1,787건이 접수되면서 활동기간이 2년 더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

었고 활동 종료시까지 모두 73건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까지 남아있던 1천여 건의 진정사건 조사를 우선하여야 했으므로 직권조사 개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망사고, 진정사건과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망사고,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사망사고 등을 중심으로 직권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관 3명으로 직권조사팀을 구성하였으나 직권조사팀 이외의 팀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위원회는 직권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서 그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1956년 사망사건 가운데 아직 미순직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 매화장보고서 등 군기록만으로 사망원인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미 군이 1996~7년 사이 특정한 질환으로 사망한 이들에 대해 일괄하여 순직으로 재심사한 적이 있으므로 같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분들에 대해 사망원인별로 분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특히 1956년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전수 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1956년에 발생한 다수의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망사건에 관한 참고인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군기록을 열람하였으나 대부분의 군기록이 진술과는 판판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이 여러 건이어서 1956년 사건 가운데 미순직처리된 사건의 기록을 모두 군에 요청하였고 군의 협조를 받아 사망원인 유형별로 분류하여 군에 사망구분에 관한 재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1955년까지 이뤄졌고 적어도 1050년대 사건을 전부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멈추게 되어 매우 아쉽다. 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들이 바뀐다 해도 조사관의 역량을 고려하면 몇 년의 추가적인 활동만으로도 군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유족과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한시적 조직의 한계이다. 위원회는 5년간 활동하였지만 당초에는 3년 예정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이 활동을 시작하면 우선은

조사관 충원 등 조직을 갖추고 조사관의 전문적 조사역량을 확보하는 데 힘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1년 정도는 사건에 대한 충실한 조사와 결정이 힘들다. 그 결과 위원회 활동 개시 후 3년이 지난 2021. 9. 30.까지 처리한 사건의 수는 863건이었으며 이후 2년 동안 997건을 처리하였다. 한시적 조직은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장점을 가지지만, 처리되지 못한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한의 압박으로 인한 조사의 부실 또는 미처리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아직도 조사해야 할 사건이 많다면 상당 기간 조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III. 군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에 의한 군인 사망사고 조사활동의 계속 필요성

군인 사망사건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유족 등이 2년의 기간 동안 제기한 진정 1,787건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 73건 등을 위원회가 모두 조사완료하였으니 더 이상 군 이외의 조사기관에 의한 군인 사망사고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위원회에서 군 사망사고 조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가운데도 ‘5년이 나 했으면 이제 군에 다시 조사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¹⁴⁾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유족도 많지 않고 예산도 아낄 겸 특별한 기구를 다시 설립할 것 없이 군에 있는 기구(전사망민원조사단)를 이용하면 족하다고 하기도 한다. 2023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뒤, 현재 군인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소속의 전사망민원조사단이 유일하다.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인의 사망사건은 군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었지만(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228조 제3항), 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청하는 민원

14)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개정안에 관하여 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1.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은 유족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군인이 사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망인의 사망구분 결정(전사, 순직 또는 일반사망), 유족에 대한 사망보상급의 지급,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결정과 이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등에 관련된다. 이러한 결정은 대부분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활과 관련한 보상의 문제가 되고, 따라서 유족의 조사신청(진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위원회 조사사건 가운데도 진정을 제기한 유족이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만 보상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를 위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 3

보훈위원회에 보류
상 보고서

49812 201
군사비밀 36,277

생년월일	성명	출생지	병역	입원	인사장
46.0	홍기호	46.0	군인	1/1	2/1
사망지	사망원인	사망구분	사망일자	사망시간	사망시간
경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사	경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사	일반사망	46.12.21	12월 21일	1시

사망원인: 경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사

사망구분: 일반사망

사진 4

제2이동외과병원
상 보고서

49812 201
군사비밀 67,798

생년월일	성명	출생지	병역	입원	인사장
46.0	홍기호	46.0	군인	1/1	2/1
사망지	사망원인	사망구분	사망일자	사망시간	사망시간
제2이동외과병원	제2이동외과병원	일반사망	46.12.21	12월 21일	1시

사망원인: 제2이동외과병원

사망구분: 일반사망

본가 방문 89명중에서 32명 인수자

하지만 군인의 사망은 유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망인의 명예 차 원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경우 사법상으로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겠지만, 헌법상으로는 명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¹⁵⁾고 본다. 죽은

이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산 사람들(주로 유족)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죽은 이의 고뇌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처구니없는 또는 날조된 사인은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물론 군의 사망사고 조사결과가 완전히 날조되거나 조작·왜곡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타살을 자살로 조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¹⁶⁾ 그러나 사건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군에 책임 있는 사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인을 ‘대충’ 짐작하여 정리하는 것(사진 1~4 참조)이며, 이 경우 대개 군의 지휘관이나 관련자의 면책을 위한 것이다. ‘죽은 사람은 기왕 죽은 것이니, 산 사람이나 피해 없이 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사건 처리는 군 관련자에게는 면책을 주겠지만, 유족에게는 오랫동안 큰 고통을 더해준다. 가까운 이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에 이어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자책이 더해지고 평생을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방치되게 한다. 자해사망의 경우 그 원인으로 ‘애인 변심’, ‘집안 부채로 인한 고민’, ‘인생 비관’, ‘가정 불화’ 등의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남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전형적인 ‘레퍼토리’다. 설사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그가 군인이 아니었더라면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 반문한다면 결코 그의 사망이 군복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가의 책임 또한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유족이 있든 없든, 유족 등의 진정이 있든 없든 군 사망사고의 사망원인을 재조사해야 하는 것은 망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갖은 고생을 하면서 군복무하다 사망한 일이 어찌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치부되고 불명예스러워야 되겠는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망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한다.

15) 같은 취지로 방승주, 헌법 제10조, (사)한국헌법학회 편, 헌법주석 I 박영사, 2013, 322면에서는 “우리 학계의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사자에 대하여 인간존엄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또는 예외적 인정설”이라고 하고 있다.

16)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가운데 과거 군 수사결과가 사고사였으나 실제 타살된 경우는 5건이 있었으며,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사고사 또는 병사인 경우는 각각 2건, 1건이 있었다. 또한 병사로 처리하였으나 사고사인 경우도 1건 있었다. 위원회, 『5년 종합활동 보고서』 제 2권, 23면.

2. 군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고 드러내야 한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까지 동원하여 군사반란을 일으킨 일과 같은 어두움이 아니더라도 군이 스스로 밝히기 어려워 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군이 벌인 1950년대의 ‘후생사업’과 법령에 반하는 장기복무의 강제, 그리고 배고프고 열악한 복무 현실 등은 과거를 드러내고 군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복무하다가 군인들이 사망하였다면 국가의 책임이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 후생사업(厚生事業)¹⁷⁾

1950년대 군인들의 급여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고, 부대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매우 부족했다. 군의 후생사업이란 주로 1950년대에 걸쳐 군의 장비와 인력 등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이를 부족한 급여에 충당하거나 부대 운영 등에 이용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군의 운영방식과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여준다. 후생사업을 통한 이익의 규모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53년 정전 이후 빨치산 토벌작전이 시행되면서 군경에 의한 도벌이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후생사업 비리를 막으려고 이를 단속하자 트럭을 운행하는 민간인 업자에게 일감이 몰렸는데, ‘지리산에서 장작을 가득 싣고 마산에 가서 팔면 갈 때마다 20배가 남았다’¹⁸⁾고 하니, 후생사업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돈벌이였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진정 제1202호 전석현 사건의 참고인 진범홍의 진술에 의하면, 15사단에서 시행한 후생사업의 종류는 총 14가지로 차량 대여, 목재(별목)공장 운영, 참나무 껍질(굴피) 판매, 뱀장사, 금광운영, 미싱사, 군화 수선, 도장

17) 이에 대해서는 한상미·송기춘, 「1950년대 군의 이른바 ‘후생사업’의 한 단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71호, 2022. 10. 참조.

18) 박문규 기자, 「아무튼 주말 “남명 조식은 민족의 스승 수백억 썼지만 뿌듯해요”, 『조선일보』 2019. 3. 23. 게시 기사. 조옥환(부산교통 대표)은 당시 ‘마대를 사서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2/2019032201573.html 검색일: 2024. 2. 3. 반대로 군이 후생사업을 하면 민간업자들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마산일보』 1959. 2. 22. 2면 「근절 아니되는 군처량의 후생사업」 제하의 기사.

쟁이, 주보(마트) 운영, 참숯가마 운영, 땀나무 장작 장사, 약초 채취, 물고기 잡이, 가설극장 운영 등을 하였다¹⁹⁾고 한다. 그밖에도 ‘몸동이 후생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군인을 후방에 보내 매월 2~3만환을 벌어들여오도록 한 것이다. 적권(赤拳) 후생사업이라고도 한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은 부대 밖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집의 가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거나 친구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발생하였다고 한다. 진범홍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후생사업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었고, 이런 상황은 전군이 예외가 없었다. 당시 장교(사단장, 연대장 등) 출신 및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부정부패의 주범들이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상납금이 달랐으며 14개 사업의 월 상납액은 총 160만환이었다. 상납된 160만환은 사단장, 연대장이 착복하였는데, 당시 장교 월급이 4천환 정도였고, 사병 월급은 칫솔과 치약(치분)을 사면 없어질 정도의 액수²⁰⁾였기 때문에, 후생사업을 엄금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후생사업이 근절되지 않고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후생사업에 동원되는 인원은 인사계에서 파견증을 발급받아 파견형식으로 사업장에 보내졌고, 월 상납금을 상납하면 1달이든 10달이든 파견증을 발급해 주었다. ‘000 외 0명’ 형식으로 파견증이 발급되었는데, 개인 명의 파견증은 도망의 우려가 있어 단체 파견증이 발급되었다.’ ‘후생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동원 또는 지원의 형식이었고, 참고인(진범홍)도 사단 전속 직후 한 달간 별목장에 동원되어 노역을 하였다. 별목사업에는 50~100명 단위로 동원되었다. 당시 군부대는 보급, 주거, 의료, 병사운용 등 모든 환경이 열악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연대 인원이 3,000여 명 되는데, 1일 20명 휴가, 파견(후생사업) 등을 보내면 연대에 남은 2,000여 명은 군내 훈련 등을 하였는데, 당시는 전쟁 후였기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후생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에 걸쳐 벌인 군의 이른바 후생사업의 이익이 반드시 급여 보충이나 부대운영에 사용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이익을 특정인이 사유화하거

19) 다음 카페 ‘승리부대전우회’에 실린 진범홍, 나의 병영일기(19) 후생사업 시작과 (22) 후생사업 마감 등 참조.
Cafe.daum.net/15X38R39R50R/lwSy/2046?q=진범홍 검색일: 2022. 10. 20. 현재 이 카페는 폐쇄되어 이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검색시도 2024. 2. 5).
20) 1955-6년경 대위의 월급은 11,581환이었으며, 이는 2021년 기준 현재 화폐가치로 약 1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병장(이등중사)의 경우는 겨우 4-5천원 정도의 액수이다.

나 유흥에 탕진하기도 하였다는 지적²¹⁾도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휴가나 외출, 출장 등을 통하여 군인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군기의 문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후생사업으로 인한 범죄 또는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후생사업에 군인을 동원하는 데는 법령 위반이 적지 않았을 것²²⁾이고, 이를 기화로 하는 갈취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망사고 등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950년대 군의 후생사업을 위해서는 군의 장비가 동원되고 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부 거주 허가를 받아 단기 또는 장기간 군 부대 밖에서 활동해야 했고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부대에 납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지역과 부대의 형편에 따라 두부 제조나 콩나물 재배, 송이버섯 채취²³⁾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난을 간 민간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소출을 취하기도 하였다²⁴⁾. 이 당시에는 후생사업뿐 아니라 기름²⁵⁾이나 피복, 군량 등 부대 물품을 몰래 팔아먹는(black market) 범죄행위²⁶⁾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급여가 워낙 낮으니 이런 일은 군부대에서 보편적(universal)이었다²⁷⁾고 한다.

이러한 후생사업은 군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에 군인을 동원하여 법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며, 노동력 착취와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21) 『동아일보』 1958. 9. 28. 자 「뒷받침 없이 채찍질. 마련해야 할 부대운영비」

22) 후생사업에 관한 필자의 글 참조. 송기춘, [칼럼] 그는 왜 사병으로 68개월을 복무했을까?, 법률저널 2022. 4. 29.자 게시 글 참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
549 검색일: 2024. 2. 5.

2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8. 29. 결정, 진정 제1738호 장역진 사건(1986년 사망)에서 보면, 육군 제3사단 일부 GOP 지역에서는 1986년에도 부대원들이 가을에 송이버섯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4) 『제2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1호, 18면에서는 “한강 이북 수복 이전에 각 사단의 각 부대가 점령하고 있던 농지를 피난민이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는 식량보충이라는 미명하에 수백 평씩을 점유 경작하고 있으면서 의연히 농민에게 농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이영섭 의원의 지적이 있다.

25) 『경향신문』 1959. 2. 16. 「사단장은 기름 팔아먹고 인사처보좌관은 사병 시켜 도벌」 기사에는 사단장이 휘발유를 팔아먹는 것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홍천】 당시 모사단에서는 거년 12월 중순경(인제 주둔 당시) 동사단장 박모준장은 군수참모(최중령)와 합의하에 휘발유 4백여 드람(싱가 5백 여만환)을 인제 제1주차장 및 원통, 속초, 홍천 등지에다 1드람에 1만2천환씩 매각한 사실이 있어 예하장병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박사단장은 당시 주둔 ‘싸이아이드(CID)’ 이종위가 동 사건을 보도하여 줄 것을 모 신문지국에 요청하였다고 하여 사단장이 구속 입건하여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단장 담(談)= 1백여 드람은 판 사실이 있으나 4백 드람은 안 될 것이다. ▲최군수참모 담= 모든 사실은(휘발유 부정처분) 여러 분이 잘 알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 ▲병참부 3중창고장 박중위 담= 휘발유 4백여 드람을 처분한 관계로 빈 드람 4백여개를 보충하여야겠다. 한 개에 3천환씩 주겠으니 4백개만 구입하여 주었으면 좋겠다.(상인을 가장한 기자에게) ▲헌병참모 담= 휘발유 4백여 드람은 부정처분한 것이 사실이다. 나도 30여 드람을 얻어서 팔았다.”

26) The KMAG Advisor(U):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o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for Combat Operation in Korea, Operations Research Office(The Johns Hopkins University), Maryland, 1962, 77면. 배진영의 기무사 비록 「<2> 김창룡 특무대장 압살 사건」, 『월간조선』 2016년 6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J&nNewsNumb =201606100047> 검색일: 2022. 10. 3.

27) 위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문서, 77면.

문제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드러난다. 다음 기사 내용은 당시의 군의 기강 문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휴가 나온 사병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데리러 가보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고 귀대를 거부하는 판이었다. 날마다 군단장 숯굴, 사단장 숯굴, 대대장 숯굴 숯을 구워주는 데 동원되고 땀감과 건축자재용 목재를 잘라내는 데 사역을 하다 보니 중대원 100명 가운데 부대에 남아 있는 인원은 10명 남짓했다. 상부에서 검열이 오면 이웃부대에서 병력을 꾸어와서 속여넘기기도 했다. 많은 장교들이 도둑질로 먹고 살고 있었다.”²⁸⁾

참고인 진범홍은, 당시 연대마다 부대 미복귀 인원이 10명을 넘기면 문책을 당하였기 때문에 휴가 간 사병을 집에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는 등 미귀 인원을 9명 이하로 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군의 불법적인 도벌에 관하여 ‘사단장은 기름 팔아먹고 인사처보좌관은 사병시켜 도벌’이라는 기사²⁹⁾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병의 급여나 휴가나 파견된 인원에 해당하는 쌀을 가로채는 일도 있었다³⁰⁾고 한다.

후생사업을 위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출장이나 파견, 군수물자 임대 등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었으므로 이러한 불법적 사업의 약점을 기회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1955. 3. 28. 국회 정기회의에서 강승구 의원은 헌병대가 군수물자 운반이나 작전에 사용하지 않는 운행 트럭을 조사하고 단속하면서 차량당 2~3만원의 벌금 받고 차량에 탑승하여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³¹⁾. 후생사업에 종사하던 군인이 자해사망하는 일도 발생³²⁾하였다. “군 후생사업을 하던 현역 군인이 군에 납부해야 할 돈에 쪼들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략), 육군203병기단 제6중대에 소속하고 있는 양결승군이 약 4개월 전 군 후생사업을 위하여 ‘지.엠.씨’ 한 대

28) 조선일보 1959. 1. 20. 「또 하나 노정된 군률의 문란, 출장 나온 사병이 취직생활」

29) 경향신문 1959. 2. 16. 「사단장은 기름 팔아먹고 인사처보좌관은 사병 시켜 도벌」 기사.

30) 장원호, 「(21)-8 무질서하고 열악한 군대의 추억, 그리고 학업과 군복무 병행의 아슬아슬했던 기억들」, Civic News 기사 참조.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5> 검색일: 2022. 10. 3.

31) 『제2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1호, 12면.

32) 일례로, 위원회 진정 제1202호 전석현 사건의 경우 망인은 1955년 1월에 입대하여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초과하여 강제적인 장기복무를 하게 되었고, 복무 65개월째인 1960. 5. 20.에 자해사망하였다. 또한 『조선일보』(1956. 12. 17.), 「厚生事業失敗한 軍人이 繪首自殺」 기사 참조.

를 가지고 대전, 무주, 금산 등지를 중심으로 임산물 운반 사업을 해왔는데 그동안 사업도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까지 고장이 나서 약 1개월 전부터 운영을 중지하게 되어 자금조달도 뜻대로 되지 않아 그동안 군에 납부할 돈도 밀려 (중략) 자살하였다 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개시하여 진상규명 결정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하라고 요청하였다.³³⁾ 가산 파탄, 우인(友人) 기만, 가짜 제대 문제 등 폐해 발생하였음이 국회 회의에서도 지적³⁴⁾된다.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자료에서도 후생자금(welfare fund) 조성을 위해 보급물자 오·남용과 활동을 감시하려 했지만 후생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³⁵⁾고 언급하고 있다.

군의 이러한 열악한 주거 등의 환경으로 인하여 1956년 폭설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56. 2. 27.-29. 사이에 동부 3군단(3, 5, 6 사단) 지역에 적설량이 3미터에 이를 정도로 폭설이 내렸는데, 그 가운데 5사단(사단장 준장 박정희)의 피해가 막심했다. 5사단에서 59명이 사망³⁶⁾하였으며, 상급부대인 3군단 전체에서는 118명이 사망하였고, 14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³⁷⁾. 이 당시 숲가마 작업에 동원된 부대원 임시막사가 무너져 12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폭설사고 당시 5사단 36연대에 근무했던 박태화(소대장 통신병)의 진술에 의하면, 호(막사) 속에서 1명만 살아 병원 후송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하여, 사망자 인식표만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이들이 왜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위원회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후생사업에 동원되어 벌목을 하다가 통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도 접하였으나 군이 작성한 사망기록에는 그와 같

3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망인의 죽음을 인지하고 직권조사를 개시(2022. 6. 27., 직권 제18호 양결승 사건)하였다. 사망한 실제 복부자는 양결승의 동생인 양운승이며, 군의 후생사업을 위하여 군 트럭을 이용한 임산물 운송사업을 하던 중 군에 납부할 돈이 밀려 고민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군 트럭으로 후생사업을 하는 경우 월 20만환을 군에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므로 한 달 여 기간 동안 돈을 부대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미납액이 30만환을 넘었을 것이고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직권 제18호 양운승 사건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2022. 9. 27. 진상규명 결정하였다.

34) 1955. 3. 18. 제20회 국회 정기회의. 『제2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호(1955. 3. 18.), 3면.

35) The KMAG Advisor(U):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o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for Combat Operation in Korea, Operations Research Office(The Johns Hopkins University), Maryland, 1962, 76면.

36) 『조선일보』 1956. 3. 5.자와 3. 9.자에 사망자 명단이 보도되었다.

37) 보병 제5사단, 『부대역사』, (발간연도 미상), 177면.

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작·은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법령에 위배된 장기복무 강제

군이 전역명령권을 남용하여 군인들의 장기복무를 강제한 사례도 나타난다. 전역명령권이 단위부대장에게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표 5〉 병 복무기간의 변천 과정³⁸⁾

연도	복무기간(월)	단축 및 연장배경	비고
53~	36	- 휴전 이후 4년 이상 복무자 전역	
59~61	33	- 징집병 부담완화	
62~67	30		
68	35	- 68. 1. 21. 사태 이후 제91차 국무회의 의결: 병 복무기간 1년 이내 연장(68. 3. 1.부터 시행)	
69~71	36	- 복무기간 1월 연장(35 → 36)	
72~76	34	- 정원이 타군으로 전환 - 73년 파월병력 복원으로 인한 병력 감축: 18,530명 - 복무기간 2월 단축(36 → 34)	
77~79	33	- 77년 병 휴가 기간 단축조정 - 복무기간 1월 단축(34 → 33)	
82	32	- 현역 복무기간 단축지시 의거 3월 단축(82년: 1월 단축, 83년: 1월 단축, 84년: 1월 단축)	
83	31		
84~92	30		- 잉여자원 해소, 병역부담 완화
93~12	26~21	- 방위병제도 폐지로 잉여자원 발생 - 병역부담 완화, 18개월로 점진적 복무 단축 추진	
2013~	21	- 남북관계 악화, 복무 단축 중지	
2018. 10. ~ 현재	18	- '18.10.~'21.12. 전역자: 2주 단위 1일 단축	

〈표 5〉에서 보듯이, 1950년대 중반 법령상 복무기간이 36개월 정도이던 당시에도,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 제1202호 전석현 사건 조사과정에서 망인(전석현)과 비슷한 시기에 입대하여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은 대대에 근무한 부대원의 복무상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40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최장 68

38) 『육군인사역사(제2집)』, 육군본부, 1987, 1355-81면.

개월을 근무한 경우도 발견된다.³⁹⁾ 만기가 되어도 제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⁴⁰⁾이나 “노병들의 제대가 신속히 되어야” 한다⁴¹⁾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된다.

장기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하사관후보생 제도와 독립부대장의 전역명령권을 이용하여 이뤄졌다. 위원회 진정 제1202호 전석현 사건의 참고인 14명은 비슷한 시기 입대하여 같은 날 제1군사령부에 전속되었지만 복무기간은 42개월에서 68개월까지 천양지차(天壤之差)를 보인다. 이렇듯 복무기간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역 당시 계급은 동일하게 모두 병장이었다.⁴²⁾ 하사로 진급하였다가 제대할 때는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하사관 부적격자들에게 하사관(ST; sergeant)으로 장기복무를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사병인사기록표’를 분석한 결과, ① 모두 하사관후보생이었고, ② 모두 장기복무를 하였으며, ③ 모두 하사해임 및 강등, 병장으로 전역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참고인 김현태는 “군 생활을 6년간 했지만, 하사계급이라도 달고 제대를 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설명도 없이 하사에서 병장으로 강등시켜 제대를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참고인인 최정수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하사에서 병장으로 강등되어 전역했는데, 당시는 전역을 시켜주지 않을까 봐 강등이유를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1954. 7. 13. 육군은 예하 독립 부대장급 이상 지휘관(주로 사단장)에게 사병 만기전역 발령권을 부여하였다⁴³⁾. 이는 부대의 형편에 따라 병력 운용의 여지를 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앞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남용되었다.

위 사건에서 1955년~1960년 사이 제7사단 8연대 2대대는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병 복무기간 33~36개월을 준수하지 않았고, 하사관 후보생(ST)이라는

39) 물론 이러한 장기복무 강제가 일반적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참고인 진법홍의 경우는 36개월을 복무했으며, 이 기간 복무한 게 입증되면 바로 전역 처분을 했다고 한다. 필자의 선친의 경우,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1월(음력)에 입대하였는데, 제대중에 보면 1958년(단시 4291년) 8월 20일에 전역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년 7개월(55개월) 가까이 복무한 셈이다.

40) 1955. 3. 28에 열린 제20회 국회 정치회의에서 김재항 의원은 “제일 첫째에 있어서 일선 장병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만기가 되어도 제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권력 있고 금력 있는 그런 사람만이 제대가 된다. 또는 군 후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 역시 사병 자체에 대해서 가정환경을 참작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된다는 불평과 “권력층에 있는 사람 또는 권도 세력이 있는 그네들의 자질(子姪)만이 현재 후방에 나와서 자유를 택하고 마음대로 있습니다마는 실제 권력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병들은 그동안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다. 『제20회 국회정치회의속기록』 제21호(1955. 3. 28.), 22면.

41) 『제20회 국회정치회의속기록』 제21호, 13면.

42) 망인(전석현)은 전역이 아닌 복무 중 사망한 관계로 병적기록표에 사망 당시 계급인 (고) 하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걸 역시 만기 전역이 아닌 ‘의가사’로 32개월 만에 전역하여 전역 당시 계급인 (고) 하사로 기재되어 있다.

43) 『육군인사역사(제1집)』, 육군본부, 1987, 15면.

제도를 악용하여 전역을 희망하는 병사들에게 ‘굶기기’, ‘구타’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장기복무를 지원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획득한 병사들은 ‘숯 굶기’, ‘별목하기’, ‘약초(나물) 캐기’ 등의 ‘후생사업’ 노역(勞役)에 동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시 군은 후생사업 노역(勞役) 동원에 활용하기 위해 병력을 강제적으로 장기복무시켰고 병사들을 후생사업에 동원·활용되면서 마땅히 전역해야 할 시기에 전역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1954. 7. 13. 예하 독립 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사병 만기 전역 발령권 부여된 이후, 일부 부대 지휘관들이 사병 인사에 대한 권한을 악의적으로 이용, 병사들에게 강제적으로 하사관 후보생(ST)을 지원하게 하여 장기복무를 시킴으로써 1950년대 중후반 사병의 실질적 복무기간은 33~36개월(55~60년 복무기간 기준)이 아닌 기약 없는 복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군의 감군명령⁴⁴⁾에도 불구하고 장기복무를 강요받은 이유는 50년 중후반 군부의 부패한 경제원이었던 후생사업에 동원할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음을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강제노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비상식적 복무상황과 복무기간’에 관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설명 요청에 대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인사참모부는 ‘규정상 사병이 5년 이상을 복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복무기간 이외에 예하 부대 차원의 상황은 당시 실제 복무를 하였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⁴⁵⁾을 낸 걸 보면,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의 자체 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후생사업은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제의 하나가 독립부대장의 전역명령권 남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다. 열악한 복무환경 속에서 군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으나 여전

44) 『육군인사역사(제1집)』, 육군본부, 1987, 18쪽.

45)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와 인사참모부에 공문발송 및 전화확인 과정에서 인사참모부 노O 중령은 ‘망인과 같은 복무기간은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복무한 병사를 대상으로 왜 5년 이상을 복무한 것이고, 그 기간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22. 3. 18.).

46) 『육군인사역사(제2집)』,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1987, 1355-9-10쪽, 『육군인사역사(제1집)』,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1987, 17쪽; ‘57. 1. 16. 후생사업 금지 지시, 1월 말까지 철수, 2월중 감사, 위반자는 징계위에 회부’.

히 미순직 처리된 이들이 많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1956년 사망자 가운데 아직까지 미순직으로 처리된 이들 1,122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6명이 군 기록만으로도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건임을 확인하였다. 우선 군이 1996~97년에 걸쳐 병병사자 일관재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재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건이 적지 않았다. 군인 사망구분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 등의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사망구분 변경이 없이 방치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위원회에 유족이 재조사를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망구분 변경을 요청하면 유사한 여러 사건 사이에 사망구분이 변경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공존하게 되어 사건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위원회는 1956년도 사망자 약 2,986명 가운데 전사와 순직자를 제외한 미순직으로 처리된 1,122명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이 중 병사로 사망한 223명(2023. 3. 27. 결정)과 지뢰폭발로 인한 사망자 30명(2023. 4. 24. 결정), 차량사고 사망자 66명(2023. 5. 22. 결정) 등을 합하여 총 436명에 대해 복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전사 및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직권 제37호, 제43호, 44호, 제45호, 제46호, 제48호 등). 이들은 대부분 1996~7년에 군의 일괄 재심사에서 누락된 이들이다.

〈표 6〉 1956년 사망자 중 추가 진상규명 사인과 인원수

사인	병사	지뢰 폭발	폭발물 폭발	차량사고	총기 오발사고	근무중 외력사	계
순직 재심사 요청 인원수	223	30	33	66	19	65	436

군은 이러한 일괄 재심사를 적극행정의 예로 홍보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해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3. 미순직 처리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군의 형편에서는 군에서 복무하다 사망한 군인은 그 죽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9. 1. 기준으로 미순직 처리된 군사망자는 아직도 약 39,000명이다. 국방부 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에서 작성한 자료(2018. 9. 1. 기준)에 의하면, 각 군별 총 사망자(232,397명) 중에서 전사자, 순직자와 심사대기자(192,961명)를 제외한 미순직 사망자는 39,436명이다. 2018. 9. 1.까지 미순직 군인사망자 가운데, 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여 645명이 전사 또는 순직(전사 12명, 순직 633명, 2023. 7. 31.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어 이 둘의 합만큼 미순직자가 감소하였고, 반면, 2018. 9. 1. 이후 사망자 가운데 약 150명 정도가 비순직 결정되어 2023. 7. 31.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미순직 군인사망자 수는 약 3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미순직 군사망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망인과 유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 등 예우가 필요하다. 아울러 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 죽음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다. 사망 당시의 기준에 따라 망인의 사망 구분을 하게 되나, 순직 인정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일괄 재심사가 필요하다. 소급적으로 재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임에도 다른 결정이 공존하여 형평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군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에 의한 직권 재조사가 필요하다

군인 사망사고 재조사를 군이 담당하는 것은 조사의 형식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군의 조사결과에 대해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스스로 사건의 조사를 맡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debet esse iudex in propria causa)’는 법언처

림 결코 적절한 문제해결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조사로는 적절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 심히 우려되기도 하거니와 설사 조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조사 주체의 문제를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유족이 군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는 원인의 하나가 이러한 군이 담당 또는 주도하는 조사기구의 문제이다.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권한은 본래 또는 고유하게 군이 갖는 것은 아니다. ‘5년이나 했으면 이제 군에 다시 조사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군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다시 군이 조사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설사 그 결과가 적절한 것이라고 해도 다시 유족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결코 적절한 조사의 방식이 아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비록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에서 발생한 사고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는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조사 개시에 진정제기를 원칙으로 할 경우,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일수록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생존해 있지 않거나 고령으로 정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권조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단 한 명의 군인도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웅의 죽음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표창하여 온 국민이 기려야 한다. 1950~70년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진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고,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2021년 7월부터 가능해졌으나 위원회 활동기간의 제한과 진정사건 우선 처리 필요성 때문에 직권조사 개시에 사실상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앞으로 3만여 건에 대해 모두 직권조사할 경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염려하지만, 우선 군 기록에 의하여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들을 선별하여 사망구분을 변경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마치며

이제 과거 군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속한 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수행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령 제1조 제4호에 근거하여 민원에 의해서 과거 군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단장(1명), 조사계획과(3명), 제1조사대(6명), 제2조사대(7명)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조사관은 10명 내외이며, 연간 50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2024년부터 조사관 3명이 증원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사망민원조사단은 직권조사 권한이 없으며, 군에 대한 불신으로 조사본부에 의한 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유족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경우도 수많은 군인 사망사건을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책수립과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금의 조직으로는 사건 입회조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한다.

적법절차에 충실하게 군으로부터 독립된 군인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아직까지 미순직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위원회 등의 재조사를 받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모두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은 과거 시위진압 등에 동원되어 군인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의경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들의 인사 기록이 거의 없어서 같이 복무한 동료들 찾기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전환복무된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등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모두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이 개정

되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망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순직으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과거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분들에 대해서도 순직 이상의 예우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군이 1차적으로 수행한 군인 사망사고 조사를 군이 다시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유권적으로 재조사할, 군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위원회 해산 뒤 몇 년 뒤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경우, 1) 위원회 해산에 3억여 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새로운 기구 구성과 조사인력 충원 및 활동 준비 등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활동의 효율성이 약화되며, 2) 몇 년 뒤 다시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사망사건의 유족이나 참고인이 될 사람들이 점차 사망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점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미 조사역량이 최고조에 이르러 활동 중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망인과 유족의 권리구제에 가장 효율적이며 예산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⁴⁷⁾하였으나,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제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유족의 신청 여부에 좌우될 것은 아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가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걸 보장한다면 단 한 명의 군인도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죽어서 더 억울해서도 안 된다. 군인 사망사고 진상규명 활동은 국방부나 군과 다투는 유족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를 위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야말로 사기를 드높이고 군기를 세우는 길이며, 강군을 만드는 길이다.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 어떠한 군인의 사고도 진상을 감출 수 없으며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

47)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망진상규명법 개정안(안규백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을 심의하면서 특별히 설훈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수고해주셨다.